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37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한병도·위성곤·이정문

김 윤・김병주・이정헌

정일영 • 진선미 • 이재강

박정현 · 양부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 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28년"으로, "202 8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28년"으로, "2028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등) ①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u>2025년</u> 12	<u>2028년</u> -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로서 공장의 부지를 <u>2025년</u> 12	<u>2028년</u> -
월 31일까지 보유하고 <u>2025년</u>	<u>2028</u>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u>년</u>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	
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2028년</u> 12월 31일)까지 사업을	<u>2031년</u>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	
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	
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	
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	
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 저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 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 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 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u>2028년</u>
<u>2028년</u>
2 <u>028년</u>
<u>2031년</u>

하다.

1. ~ 3. (생 략)

② ~ ⑦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